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 의료지원 격차 완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해소 및 의료기관 선택폭을 넓히고자 감면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의료지원을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 비용까지 확대하고, 약제 비용 지급 신청 및 접수 등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·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의료지원 범위 확대(안 제64조)

무공수훈자 및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을 약제 비용 지원대상에 포함하고, 연간 지원금액은 고시로 정함

나. 위탁병원 약제 비용 지급(안 제64조의2)

약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다. 위탁병원 약제 비용 신청 및 지급업무의 권한 위임·위탁(안 제102조)
약제 비용 지급 신청서 접수를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고, 지급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'22년 소요예산 반영(4분기, 15백만원)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와 소요예산 관련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2항 및 제3항”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제7항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약제비용을 지원하되, 연간 지원금액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로 한다.

제6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64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약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지급한다. 이 경우 약제 비용을 지원받을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약제비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2조제1항제33호 중 “영 제63조·제64조제5항”을 “영 제63조·제64조제6항·제64조의2제3항”으로, “접수 및”을 “접수,”로, “지정협의서의 접수”를 “지정협의서의 접수 및 약제비 신청서의 접수”로 하고, 같은 조

제5항 중 “제외한다)”를 “제외한다)와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진료비용
중 약제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4조(진료 비용의 감면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4조(진료 비용의 감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제7항제1호및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약제비용을 지원하되, 연간 지원금액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로 한다.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4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.	④ 제2항 및 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~ ⑥ (생략)	⑤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
제64조의2(약제비용의 부담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4조의2(약제비용의 부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64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약제 비용은 국가보훈처
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41